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액 임금체불 가중처벌〉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5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가. 특정범죄가중법 개관	6
나. 임금채불에 대한 제재조치 개관	6
다. 검토의견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6. 2.
3. 회 부 일: 2025. 6.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임금채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처벌기준으로는 임금채불 총액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 고액의 임금채불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채불임금 변제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등의 채불총액이 10억원 이상 고액인 사업주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에 고액 임금등 체불행위를 추가하여, 임금등을 체불한 액수에 따라, i)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ii)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 <u>산업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및 「 <u>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u> 」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산</u> <u>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u> <u>법률</u> 」, 「 <u>마약류 관리에 관한</u> <u>법률</u> 」 및 「 <u>근로기준법</u> 」----- ----- ----- ----- -----.
<신설>	제11조의2(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 <u>근로기준법</u> 」 제 109조제1항에 규정된 죄(같은

	<u>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그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체불총액(이하 이 조에서 “체불총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u> <u>1. 체불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2.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현행법상 사업주의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1)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 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임금체불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위축,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임금체불,³⁾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의 영향으로⁴⁾ 임금체불액이 늘어나고 있는바,⁵⁾ 개정안은 고액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여 10억원 이상의 고액 임금체불행위를 엄중하게 단죄하여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단위: 억원)

연도	5인 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확인불가	전체
2024	6,659	7,932	3,277	1,510	1,049	21	20,448
2023	6,150	7,068	2,666	955	982	24	17,845
2022	4,533	5,427	2,034	874	595	9	13,472
2021	4,516	5,489	1,971	885	630	13	13,505
2020	5,120	6,560	2,673	829	635	14	15,830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4) 2025. 2. 6.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참고

5)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임금체불 근로자수	임금체불액
2024	28.3	20,448
2023	27.5	17,845
2022	23.8	13,472
2021	24.7	13,505
2020	29.4	15,830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특정범죄가중법 개관

특정범죄가중법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과업의 수행 중’에 특정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대체하여 1966년 제정되었음.⁶⁾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은 제1조(목적)⁷⁾에 규정된 특정범죄만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므로, 제1조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도 가능함.⁸⁾

나.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조치 개관

현행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조치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명단공개⁹⁾(「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신용제재¹⁰⁾(「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도를 병행 중

6) 박상기·전지연·한상훈, 형사특별법 제3판, 22쪽; 김경환·김슬기, 형사특별법 제2판, 269쪽

7)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법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박상기·전지연·한상훈, 같은 책, 23쪽

9)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①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②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명단공개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10) 신용제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 동안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이 해제됨.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되는 조치를 말함.

이나, 그 엄격한 요건 등으로 대상이 적어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2024년 10월 22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0520호, 2025. 10. 23. 시행)을 통해 상습채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자료 제공,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채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였음.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예정)을 통해 임금채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으며,¹¹⁾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법률 제21475호, 2026. 9. 18. 시행 예정)으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음.¹²⁾

11) 「근로기준법」(2026. 4. 7.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되어 10. 8. 시행 예정인 것)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채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3. 17. 법률 제21475호로 개정되어 9. 18. 시행 예정인 것)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채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아울러,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지급한 경우 사업자에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예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¹³⁾ 처벌수위가 낮아 체불임금 대비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어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실효적인 임금체불 해결방안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¹⁴⁾¹⁵⁾ 개정안은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¹⁶⁾을 해칠 수 있는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를 보다 엄중하게 단죄함으로써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¹⁷⁾에서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13) <2024년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자 처분결과>

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보완 수사 요구	공소 보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20,274	10,743	10	1,510	9,223	7,586	2,172	1,197	1	4,216	1,900	20	5	-

자료: 2025 범죄분석, 대검찰청

14) 송승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0집제1호, 327-358쪽
 15)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사건이 77.6%로 체불 적발 시 처분이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침.(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2025. 9. 2.)
 16)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 “처벌의 강도를 높이거나 처벌의 확률을 올리는 방법으로 기대처벌비용을 올리면 범죄의 기대순이익을 낮추어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다”(김증호, 앞의 글, 94쪽)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¹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체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의 보충성 측면 및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임금체불의 원인은 도산·자금난 등의 경제적 요인,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사업주의 악의적·상습적 체불,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¹⁹⁾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직접적으로 체불임금 해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반면, ii) 개정안에 따라 총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를 구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²⁰⁾ 반의사불벌 규정²¹⁾을 적용할 수 없어 오히려 임금체불 청산을 독려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iii) 최근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자료 제공,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

18)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사용자에게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재산권적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6헌바27 결정례)

19) 송승운, 앞의 글, 333쪽

20)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생략)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김종현 60쪽; 349쪽

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도입하고(법률 제20520호, 2025. 10. 23. 시행), 임금체불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예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특정범죄가중법을 통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²⁾²³⁾

둘째,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범죄와의 관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가중적 구성요건의 실효성 및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만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음. 각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아니면 경합범인지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의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될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²⁴⁾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²⁵⁾ 피해자

22) “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연합뉴스, 2026. 1. 30.자 기사)

23) <체불발생 및 청산현황(월별, 누계)> (단위: 억 원, %, 명)

연월	체불 금액				체불 피해 노동자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	청산율	체불인원	청산인원	미청산
‘25.12월	20,679	18,644	2,035	90.2	262,304	257,282	5,022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4) 이주원, 특별형법 제8판,, 381쪽.

2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별로 독립한 범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며,²⁶⁾ 「근로기준법」상 임금채불범죄의 죄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보고 있음.²⁷⁾ 또한, 수회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채불한 경우에도 각 임금지급일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²⁸⁾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경우, 각 피해자의 각 임금지급일의 채불임금액이 개정안에 따른 가중적 구성요건인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가중처벌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의 취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불 범죄와 다르게 전체 근로자 및 수회의 임금지급일에 대한 총 임금채불액을 합산²⁹⁾하여 1개의 범죄로 처벌하려는 것인 경우에도, 법 집행 과정에서 기소 시점에 따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특정범죄처벌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될지, 특정범죄처벌법 안 제11조의2 각 호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기소·처벌된 후 「근로기

2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27)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28) 권오성, 임금채불의 형사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제24호, 21쪽

29) 특정범죄가중법상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구성요건에서, ①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은 수뢰액 산정에서 단술일죄 및 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하나, 경합범은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고(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634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국고 등 손실죄(제5조)는 포괄일죄의 손실액을 합산하고 실제적 경합범은 각각은 손실액을 산정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제8조의2)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하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6조)은 는 반면, ② 조세 포탈 가중처벌(제8조)은 “연간” 단위로 포탈세액을 합산함(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준법」상 임금체불범죄 등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관력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바,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적 운영 측면
에서 검토가 필요함.

정리하면, 개정안은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해칠 수 있는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를 보다 엄중하게 단죄함으로써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해 경각심
을 갖게 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특정범
죄가중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체불임금 해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형벌의 보충성 측면 및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
요하며, 각 피해자의 각 임금지급일별로 죄수를 산정하는 「근로기
준법」상 임금체불 범죄와의 관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가중적 구성
요건의 실효성 및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56